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195

발의연월일: 2024. 8. 26.

발 의 자:조승환·이성권·서일준

안철수 · 권영세 · 김승수

이인선 • 구자근 • 인요한

김성원 · 임이자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권자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어업권이나 어업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 등의 경우에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대집행법」 절차를 따르는 경우 그 이행에 장시간이소요되나 위법하게 설치된 어구·시설물을 사용한 조업은 단시간 내에 완료되는 경우가 많아 대집행의 실효성이 미미하여 유사한 사례가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구·시설물을 철거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종류별로 어구마다

그 사용을 허가하되, 어구의 규모 및 사용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조업현장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양이상의 어구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폐기·유실 어구 발생량을 증가시켜 해양오염과 수산자원 피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구·시설 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구의 설치 및 폐기·유 실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 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어업질서 확립 및 어업인의 어구 사용·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를 통하여 수산자원과 해양환경 보 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어구·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수산 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속하게 어구·시설물을 철 거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2 신설).
- 나. 행정관청이 어구·시설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얻은 어획물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도록 함(안 제65조의3

신설).

-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과 설치 위치, 유실·폐기된 어구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한 어구관리기록부를 어선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유실된 어구가 일정 규모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신설).
- 라.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한 자와 유실어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2조제4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행정관청은 어구·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구·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 1. 제4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는 경 우
-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 사용량, 조업 금지기간·구역을 위반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 3. 제76조에 따른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 4.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조업금지구역에 설치한 어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어구·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65조의3(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 ① 행정관청은 제65조제3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로 얻은 어획물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 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기 어려운 경우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보관 하거나 매각·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6조의2(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전자화된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어구관리기록부"라 한다)를 어선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 출항 당시 어선에 적재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
 - 2.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
 - 3. 어구의 설치 위치
 - 4. 폐기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
 - 5. 설치한 어구 중 유실된 어구(자연재해 등으로 분실된 어구를 포

함한다)의 종류 및 수량

-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어업인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유실된 어구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 내용·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유실된 어구의 규모와 신고 내용·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76조의3(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적정하게 작성·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어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어선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1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과 위탁)"을 "(권한·업무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권한"을 "업무"로, "장에게"를 "장이나 관련 전문기관·단체에"로 한다.

제112조제4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 또는 보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8의3. 제7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실어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다만, 제4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경찰서장이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현 행 <u><신 설></u> | 제65조의2(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행정관청은 어구·시설 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
| |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 나하고 어구·시설물을 철거하 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구·시설물을 철거 하는 경우 |
| |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 사 용량, 조업 금지기간·구역을 위반한 어구·시설물을 철거 하는 경우 3. 제76조에 따른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시설물을 철거 하는 경우 4.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 |

<신 설>

에 따른 조업금지구역에 설치 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 거한 어구·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3(어획물에 대한 방류조 치 등) ① 행정관청은 제65조 제3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 른 조치로 얻은 어획물이 이전 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고 수 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어 획물을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기 어려 운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매각· 페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신 설>

수 있다.

제76조의2(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①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 사하는 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전자화된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어구관 리기록부"라 한다)를 어선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 야 한다.

- 1. 출항 당시 어선에 적재한 어 구의 종류 및 수량
- 2.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
- 3. 어구의 설치 위치
- 4. 폐기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5. 설치한 어구 중 유실된 어구(자연재해 등으로 분실된 어

구를 포함한다)의 종류 및 수 량

-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어업인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유실된 어구가 일정 규모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해양수 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

<신 설>

제101조<u>(권한의 위임과 위탁)</u> ①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구관리기록 부의 작성 내용·방법 및 제2 항에 따른 유실된 어구의 규모 와 신고 내용·방법·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렁으로 정한다.

제76조의3(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적정 하게 작성·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어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어선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 서 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게 내보여야 한다.

제101조<u>(권한·업무의 위임·위</u> <u>탁)</u>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 또는 「어촌·어항법」 제57조에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장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2조(과태료) ① ~ ③ (생 지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 략) <신 설>

<신 설>

9. ~ 11.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

| <u>업무</u> | |
|---------------------------|-----------|
| | |
| | |
| | |
| | |
| | |
| <u></u> 장이 | 나 |
| <u>관련 전문기관·단체에</u> | |
| <u>.</u> | |
| 제112조(과태료) ① ~ ③ (현 | . 행 |
| 과 같음) | |
| 4 | |
| | |
| | |
| 1. ~ 8. (현행과 같음) | |
| <u>8의2.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u> | :하 |
| 여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 | <u>또</u> |
| 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 | <u> 짓</u> |
| 으로 작성한 자 | |
| <u>8의3. 제76조의2제2항을 위반</u> | |
| 여 유실어구 신고를 하지 | 아 |
| <u>니한 자</u> | |
| 9. ~ 11. (현행과 같음) | |
| 5 | |
| | |
| | |

청이 부과·징수한다. <u><단서</u> <u>신설></u> -----. <u>다만, 제4항제</u> 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른 과 <u>대료는 해양경찰서장이 부과·</u> <u>징수할 수 있다.</u>